

도이치 글로벌 토털 리턴 스트래티지 (Total Return Strategy) 재간접투자신탁

2011. 6. 13. 규약 및 투자설명서 변경

주요변경내용

- 해외투자자문회사로부터의 투자자문 내용 삭제

1) 규약

내용	변경 전	변경 후
제6조의2(해외투자자문회사로부터의 투자자문)	<p>제6조의2 (해외투자자문회사로부터의 투자자문)</p> <p>① 자산운용회사는 당해 투자신탁에 편입되는 해외자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해외투자자문회사를 선정할 수 있다. (Deutsche Asset Management (Asia) Limited). 그리고 해외투자자문회사를 선정시에는 그 보수는 자산운용회사의 보수로부터 지급한다.</p> <p>② 제1항의 해외투자자문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투자대상의 선정과 관련한 조언 2. 투자신탁재산을 위한 투자정책과 관련한 조언 및 외국투자대상지역에 대한 투자정보나 자료를 제공 3. 기타 제 1 호 내지 제 2 호와 관련하여 자산운용회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업무 	삭제

2) 투자설명서

내용	변경내용
<p>제 1부. II. 투자정보</p> <p>2. 주요투자전략</p> <p>제2부. 1. 투자전략 및 투자위험 등. 1. 투자전략</p>	<p>< 해외투자자문회사로부터의 투자자문관련 내용 아래 문구 삭제 ></p> <p>투자 대상 간접투자증권 및 투자비중은 운용 규모, 과거의 운용성과, 향후 전망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며, 해외자산의 경우 이 투자신탁의 해외투자자문회사인 Deutsche Asset Management Asia (도이치 자산운용 아시아)의 자문을 받아 편입 비중을 결정합니다.</p>